



제444차 이사회 승인(2025. 12. 9.)

한국스카우트연맹

안전보호정책

Safeguarding Policy

담당 : 안전보호위원회



한국스카우트연맹
Korea Scout Association

한국스카우트연맹 행동강령

청소년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지닌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모든 스카우트 활동이 청소년을 신체적·정서적·심리적·성적 등 모든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지도자 및 모든 성인 참여자는 교육자라는 자세로 견지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실천해야하며,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세계스카우트총회의 결의에 따라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안전보호정책을 도입하여 이를 스카우트 활동의 기본정책으로 삼기로 결의하고 아래와 같은 정책을 표방한다.

I. 목적

한국스카우트연맹은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아동, 청소년, 지도자 및 성인 구성원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성적 위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위해 예방과 상응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II. 위해 유형의 정의

본 정책에서 다루는 위해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학대

- 폭행, 상해, 과도한 훈련, 식사제한 및 수면 박탈 등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 등

2. 정서적 학대

- 비하, 협박, 조롱, 무시, 거부, 감정 조작으로 인한 자존감, 정서에 손상을 주는 행위 등

3. 성적 학대

- 동의 없는 신체 접촉, 성적인 말이나 행동, 성희롱, 성추행, 성적 촬영 및 유포 행위 등

4. 방임

- 적절한 보호, 감독, 기본적인 필요(식사, 위생, 안전 등)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

5. 사이버 폭력

- 사이버불링, 디지털 감시, 개인정보 유출, SNS를 통한 괴롭힘 등 온라인 피(위)해 행위 등

6. 차별 및 배제

- 성별, 성적지향, 장애, 출신지역, 종교, 민족,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편견·혐오 표현

Ⅲ. 적용범위

본 정책은 중앙본부, 지방·특수연맹, 지구연합회, 단위대 등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 적용되며, 스카우트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아동, 청소년, 지도자 및 성인 구성원이 적용 대상이다. 일상적인 스카우트 행사 뿐 아니라 집합행사(캠프, 대회, 해외교류 활동 등)에 적용된다.

IV. 주요 정책

성인지도자는 매년 안전보호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인지도자는 집합행사 전 한국스카우트연맹 행동강령 준수 다짐을 포함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V. 행동강령

한국스카우트연맹은 모든 성인지도자와 청소년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별도 제정하여 본 정책에 부속 문서로 포함한다.

VI. 보고체계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안전보호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며, 모든 사례는 기밀을 최대한 유지 해야 한다. 사안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기관과 협조해야 한다.

VII. 정책 갱신

이 정책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변화된 환경과 법령,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는 안전보호위원회에서 논의 및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공표한다.

Ⅷ. 연계문서

본 정책과 함께 반드시 통합·운영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스카우트연맹 행동강령
2. Do & Don't(지켜야 할 것 & 삼가해야 할 것)
3. 아동청소년 위해관련 법령
4. 신고 및 대응체계
5. 안전보호 교육 커리큘럼
6. 위해 유형별 구체적 예시

연계문서 1

한국스카우트연맹 행동강령

나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일원으로서, 모든 청소년과 성인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고, 스카우트 선서와 규율에 담긴 가치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서약한다.

나는 아래의 사항을 성실하게 따를 것을 맹세한다.

-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어떠한 개인적·사회적 배경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 청소년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사이버 폭력, 차별 및 배제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학대와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 사람마다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나의 언행이 타인에게 불편함이나 위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청소년과 1대1로 고립된 상황을 만들지 않으며, 모든 활동은 투명하게 진행한다.
- 권력이나 지위를 남용하지 않으며, 평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 청소년과 함께하는 활동 중에는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으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
- 마약·불법 약물을 사용하거나 소지하지 않는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책임 있고 모범적인 언행을 한다.
- 의심되는 학대, 차별, 부적절한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보고한다.
- 안전보호 관련 교육과 훈련에 성실히 참여한다.

나는 위의 행동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스카우트 지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한다.

나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한다.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인)
 일 자 : 2025. 00. 00.

연계문서 2

Do & Don't (지켜야 할 것 & 삼가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Do)

1.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대한다.
2.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한다.
3. 청소년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4. 청소년과 함께할 때 모범이 된다.
5.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6. 모두가 다르게 느낄 수 있음을 이해한다.
7.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책임 있게 행동한다.
8. 불편한 상황이나 위반 사항을 알게되면 즉시 보고한다.
9. 스카우트의 규율과 행동강령을 성실히 지킨다.

삼가해야 할 것(Don't)

1.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2. 권력이나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다.
3. 마약, 불법 약물, 흥기 소지 등 불법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4. 폭언, 괴롭힘, 따돌림 등 언어적·심리적 학대를 하지 않는다.
5. 청소년 앞에서 술·담배를 하지 않는다.
6.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7. 동의 없이 청소년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사적으로 연락하지 않는다.
8.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말을 쓰지 않는다.
9. 문제가 생겼을 때 축소하거나 묵인하지 않는다.
10. 스카우트의 명예와 신뢰를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연계문서 3

아동·청소년 피해관련 법령

I.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란, 만 18세 미만인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대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에 규정합니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2.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가. 신체적 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말하며(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대표적으로는 폭행, 상해, 체벌 등 직·간접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에게 욕설, 폭언, 협박을 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고 판단합니다.

다. 성적 학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성학대가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합하여 처벌됩니다.

라. 유기·방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제71조 제1항 제2호).

3. 보호·감독자에 의한 아동학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8호).

5. 공소시효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이는 아동학대범죄가 피해아동의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II. 성폭력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

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유형

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한 사람,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7조)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한 사람,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한 사람,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 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말하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됩니다.

다.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①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함)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사람(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 ④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위계나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처벌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Ⅲ.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죄 유형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 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사람,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사람은 처벌됩니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청소년보호법 제11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그러한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청소년보호법 제15조의2)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만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할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 의사의 실현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유인·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됩니다.

IV. 디지털 성범죄

1.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처벌됩니다.

2.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 ②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이하 ‘반포’라 함)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사람,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되며, ④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3.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반포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함)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등”이라 함)한 사람, ②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등”이라 함)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등을 한 사람 또는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 행위를 한 사람, ④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처벌됩니다.

V.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보호

1.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가.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응급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나. 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국선변호사 선정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라. 상담 등 치료 지원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항).

2.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가. 상담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6조).

나. 영상물 삭제 등

사법경찰관리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항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촬영물등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

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 피해자들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3. 성폭력 가해자 처벌의 부수처분

가.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1항).

나.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사람에 대하여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판결의 확정일부부터 일정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50조).

연계문서 4

신고 및 대응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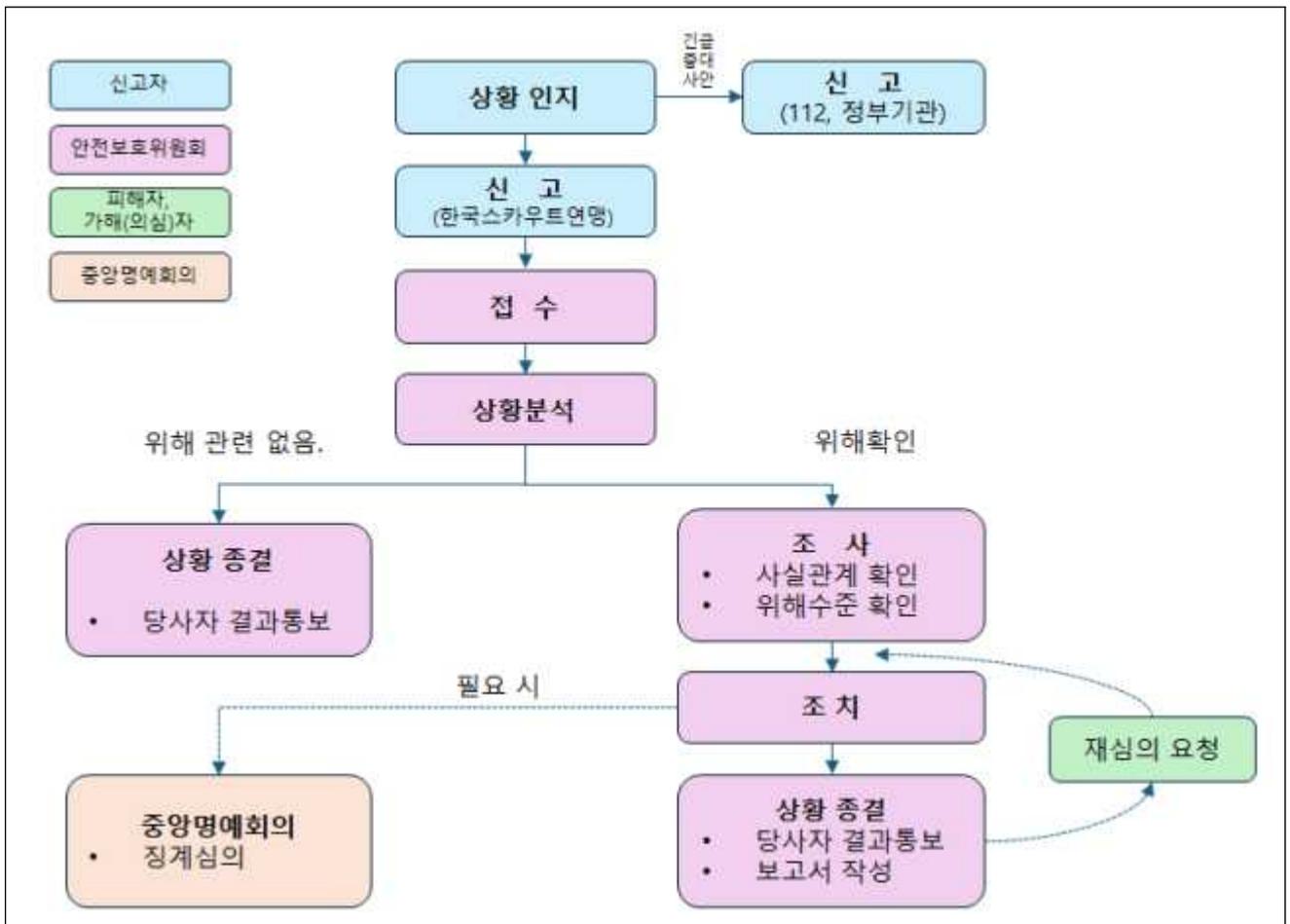
‘안전보호 관련 위반 사건’을 겪었거나 목격했을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 * 안전보호 관련 위반 사건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사이버 폭력, 차별 및 배제 등

1. 신고방법

- 제공된 온라인 ‘안전보호 위반 신고서’(홈페이지 탑재)를 작성하여 제출
 - * 필요 시 경찰 및 관련 정부기관에 즉시 연락
 - * 본 신고체계는 안전보호 위반 사안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본 정책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일반 사안인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2. 신고 및 대응 체계



안전보호 교육 커리큘럼(안)



안전보호위원회

안전보호교육

[목차]

1. 정책도입 배경
2. 목적
3. 위해유형
4. 적용 범위
5. 행동강령
6. 신고 및 대응체계
7. 아동·청소년 위해관련 법령



한국스카우트연맹
Korea Scout Association



1. 정책 도입배경

World Scout Conference in 2002

2002-07 Keeping Scouts Safe from Harm

The Conference,

- recognizing tha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quests States to ensure that children are protected from all forms of physical or mental violence, injury or abuse, neglect or negligent treatment, maltreatment or exploitation, including sexual abuse
- noting that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in society of the need to protect young people from all forms of abuse
- considering that Scouting is an educational movement whose mission is to help young people develop their full potential in accordance with the Scout Method, which involves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peer group under appropriate adult guidance
- emphasizing that the achievement of Scouting's mission makes it essential for the Movement to provide young people with a 'safe passage' which respects their integrity and their right to develop in a non-condemning environment
- further emphasizing that providing the 'safe passage' is possible only if young people are protected from all forms of abuse, i.e. verbal, physical, sexual and emotional, neglect and peer pressure
- welcoming the fact that a number of NSOs have developed effective policies and procedures aimed at ensuring the 'safe passage' for their young people in Scouting
- urges NSOs to adopt and implement policies and procedures to ensure the safe passage of young people throughout their time in the Movement
- recommends that in developing such policies associations should ensure that legal requirements within a country, and the standards set out with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e met
- further recommends that NSOs ensure that such policies are duly reflected in the reality of the association's activities, in particular:
 - at the level of the youth programme - that it builds self-confidence and self-esteem in young people and develops the ability to protect and express themselves
 - at the level of adult leadership - that recruitment policies ensure that only appropriate adults are recruited and that all adults, irrespective of their role, receive training and support in this area
- at the level of management of the association - that policies and procedures for supervision, including risk management, incident management and public relations are put into place
- recommends to the World Scout Committee that laws and documents are developed to support National Scout Organizations with the implementation
- urges the World Scout Region to strongly advocate and support the results of action.

국제 기준 준수 (UN 아동권리협약)

- 아동·청소년을 모든 형태의 폭력, 학대, 방임으로부터 보호

스카우트 운동의 사명과 안전

- 청소년이 존중 받으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환경 제공

정책과 절차 마련

- 각국 NSO가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실행할 것을 촉구.
- 국가 법률 및 UN 아동권리협약 기준을 충족해야 함.

적용 영역

- 청소년 프로그램, 성인리더십, NSO 운영정책적 지원 요청
- 세계스카우트위원회는 NSO 지원을 위한 도구와 자료를 개발



한국스카우트연맹
Korea Scout Association



1. 정책 도입배경

World Scout Conference in 2017

2017-05 World Safe from Harm Policy

The Conference,

- reaffirming Conference Resolutions (1990-10: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2002-07: Keeping Scouts Safe from Harm,
- considering the necessity to ensure that Scouting continues as a safe learning environment for children, young people, and adults, and the critical role that adults play in achieving this,
- considering the Member Organizations' assessment on Safe from Harm developed by the World Scout Committee with the support of the World Scout Bureau,
- adopts the World Safe from Harm Policy, Conference Document 5, for ensuring the continuing well-being, healthy development and safety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during their time in Scouting;
- resolves that any existing systems and procedures on Safe from Harm at the world level are now modified by the adop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World Safe from Harm Policy;
- invites Member Organizations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new World Safe from Harm Policy;
- requests the World Scout Committee to allocate resource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World Safe from Harm Polic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networks;
- requests the World Scout Bureau to develop and distribute guidelines which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World Safe from Harm Policy.

Safe from Harm 정책 채택

- 아동·청소년을 모든 형태의 폭력, 학대, 방임으로부터 보호

회원국 실행 권장

회원국 지원체계 마련



한국스카우트연맹
Korea Scout Association



1. 정책 도입배경

World Scout Conference in 2021

2021-04 Strengthening Safe from Harm to the Scout Movement

The Conference,

- acknowledging the progress that has been made through the approval of and implementation of Conference Resolutions 2019-04, 2020-07 and 2021-03 to strengthen Member Organizations' commitments to ensuring Scouts Safe from Harm and adjust the World Safe from Harm Policy;
- acknowledging that Scouting, as a Movement of 110 million of volunteering young people, has a different from, and more diverse, nature than commercial and profit-driven activities;
- Welcomes on behalf of the Scout Movement, that we:
 - strongly condemn any abuse of young people and adults for a physical, mental, emotional or sexual in nature;
 - deplore that some have misused the Scouting Programme as a platform to commit reprehensible acts of abuse against young people and adults;
 - are deeply alarmed by any cases of abuse and strongly urge those who witness:
 - as a minimum, to report, take about the well-being of all victims - young people and adults;
 - ensure support of the accused (only for Member Organizations to observe their official and legal responsibilities towards victims of abuse);
 - call for positive and urgent steps to be taken at all levels, including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Conference Resolutions;
- reaffirming the urgency of a continued and strengthened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afe from Harm Policy as an integral part of the Scout Movement;
- requests the World Scout Committee and the World Scout Bureau to conside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afe from Harm Policy as a key priority for Member Organizations, supported by:
 - strengthening financial support to Member Organizations that exist to achieve the requests of the Conference Resolutions;
 - creating, testing and deploying a regular assessment mechanism during the 2021-2024 Triennium to monitor compliance of Member Organizations with the World Safe from Harm Policy;
 - ensuring full adherence of compliance with the World Safe from Harm Policy as of 2021 can best be achieved while being mindful of national requirements and requirements;
 - ensuring full integ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afe from Harm guidelines in all World and National events, communication and resources;
 - ensuring a culture of learning when Safe from Harm incidents occur at local and Regional Scout Events, to reduce the risk of future incidents;
 - enhancing collaboration and sharing of best practices between Member Organizations;
 - investigating cases in which Member Organizations and the World Scout Bureau, can work together to prevent similar incidents from re-occurring within the Scout Movement;
- Requests of Member Organizations to:
 - address the report 'Safe from Harm: a matter of highest priority, recognizing that the safety and mental well-being of young people and their development is at the heart of the Mission of Scouting;
 - commit to being compliant with the World Safe from Harm Policy by the 43rd World Scout Conference, making full use of the strengthened support offered by World Scouting;
 - ensuring that Safe from Harm is embedded transversally in all areas of work, in particular education of all members, governance and communications;
 - raise the awareness of young people and adults on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to protect their safety and to report potential cases of abuse;

학대에 대한 강력한 입장

- 모든 형태의 아동·성인 학대를 강력히 규탄
- 피해자의 복지와 회복에 대한 중요성 강조

정책이행 강화

- Safe from Harm 정책 이행을 긴급 과제로 설정
- 세계연맹에서 회원국 지원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 회원국 정책 준수 강제 방안 모색

회원국에 대한 요청

- Safe from Harm을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
- 모든 스카우트 활동 분야에 Safe from Harm 내재화



한국스카우트연맹
Korea Scout Association



1. 정책 도입배경

World Scout Conference in 2024

2024-05 SAFE FROM HARM

The Conference,

- recognizing the evolution of Safe from Harm through Conference Resolutions and WOSM Constitutive article V.1.a;
- considering that safety, safeguarding, and well-being are necessary to offer a safe learning environment for children, young people, and adults in Scouting;
- acknowledge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Safe from Harm assessment mechanism;
- notes the annex to the World Safe from Harm Policy included in Conference Document 7, as approved by the World Scout Committee, as an outcome of Conference Resolution 2021-04;
- requests the World Scout Committee and the World Scout Bureau in the upcoming triennium to:
 - review the World Safe from Harm Policy and supporting resources to ensure alignment with the Safe from Harm assessment mechanism and international safeguarding standards;
 - further support Member Organizations taking into account their diversity of needs, to meet the Safe from Harm standards through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Safe from Harm assessment mechanism;
 - implement a mechanism to enforce compliance with WOSM Constitutive article V.1.a, while being mindful of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 calls upon Member Organizations to recognize their collective accountability and to lead the change within their organization when it comes to protecting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s declared in Conference Resolution 2021-04.

세계연맹

- 평가 매커니즘 전면 시행
- 회원국이 기준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회원국 요건 중 Safe from Harm 관련 현장 준수 강제 매커니즘 마련

회원국

-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집단적 책임 인식
- 조직 내 변화를 주도

[세계연맹 현장 5조 e항] 회원국 가입 요건 중

스카우트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리더십의 질, 정책 및 절차, 리더 훈련 체계, 회원 수와 자원 등을 통해, 회원국이 자립적이며 회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기구로서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



한국스카우트연맹
Korea Scout Association



1. 정책 도입배경

한국스카우트연맹 제440차 중앙이사회

(가칭)Safe from Harm 위원회 설치 승인

- 세계연맹 Safe from Harm 정책 검토
- 세계연맹 Safe from Harm Self-Assessment Tool 활용한 진단 시행
- 회원국 우수사례 검토
- 한국연맹 정책 구성 및 개발 단계 정의

한국스카우트연맹 제444차 중앙이사회

한국스카우트연맹 안전보호(Safeguarding)정책 승인

- 승인된 정책에 따른 교육자료 개발, 홍보, 신고 및 대응체계 운영 예정



2. 목적

스카우트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성인의 안전과 존엄을 보호

- 신체적·정서적·심리적·성적학대, 사이버 폭력, 차별과 배제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문화 정착

- 행동강령·교육·절차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지원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체계를 통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

- 보고·조사·조치의 표준 절차를 갖추어 조직 전체의 책무성을 강화



3. 위해 유형



3. 위해 유형



폭행, 상해, 과도한 훈련, 식사제한 및 수면 박탈 등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 등

- 예시**
- 교육 과정에서 체벌(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기)을 하는 경우
 -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 오래 뛰기 등 과도한 체력성 체육 활동을 강요
 - 실수했을 때 머리나 몸을 세게 잡아끌거나 흔드는 등의 행위



비하, 협박, 조롱, 무시, 거부, 감정 조작으로 인한 자존감, 정서에 손상을 주는 행위 등

- 예시**
- 실수나 약점을 지속적으로 놀리거나 모욕하는 경우
 -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큰소리를 치며 위축되게 만드는 경우
 - "넌 쓸모없다", "넌 리더가 될 수 없다" 등의 부정적 낙인 발언
 -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깎는 경우
 - 단체 활동에서 실수를 이유로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행위



3. 위해 유형

성적 학대

동의 없는 신체 접촉, 성적인 말이나 행동, 성희롱, 성추행, 성적 촬영 및 유포 행위 등

예시

- 원치 않는 신체 접촉(어깨 쓰다듬기, 껴안기, 허리 감싸기)을 하는 경우
- 성적인 부분을 연상시키는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를 하여 아동들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
- '장난'이라며 신체 민감 부위를 만지는 경우
- 온라인으로 성적인 메시지, 사진, 영상을 보내는 경우
- 샤워실, 탈의실에서 지도자가 불필요하게 지켜보거나 사진을 찍는 경우
- 권위를 이용해 아동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방임

비하, 협박, 조롱, 무시, 거부, 감정 조작으로 인한 자존감, 정서에 손상을 주는 행위 등

예시

- 아프다고 했는데도 치료나 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기후 변화(추위, 폭염)에 맞는 의복이나 안전 장비를 준비시키지 않는 경우
-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물을 제한하는 경우
- 안전 규칙(물놀이, 산행, 화기 사용)을 알려주지 않고 위험 상황에 방치
- 지도자가 장시간 자리를 비워 청소년들이 안전 관리 없이 방치되는 경우



한국스카우트연맹
Korea Scout Association



3. 위해 유형

사이버 폭력

사이버불링, 디지털 감시, 개인정보 유출, SNS를 통한 괴롭힘 등 온라인 피(위)해 행위 등

예시

-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조롱하거나 괴롭힘
- 타인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사진)를 무단으로 공유
- 사진·영상이 동의 없이 SNS에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 발생
- 온라인 게임, SNS에서 스카우트 동료들끼리 욕설·비방을 주고받는 경우
- 성인 불법 사이트나 유해 콘텐츠 링크를 전송하는 경우

차별 및 배제

성별, 성적지향, 장애, 출신지역, 종교, 민족,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기반한 차별, 편견, 혐오 표현 등

예시

- 특정인을 야영 활동에서 의도적으로 제외
- 특정인의 출신 지역, 피부색, 언어를 이유로 놀리거나 배제
- 특정 성별에게 기회나 활동 참여를 제한
- 특정 종교 의식을 강요하거나, 다른 종교 청소년을 배척하는 경우



한국스카우트연맹
Korea Scout Association



4. 적용 범위

스카우트 활동의 모든 조직, 모든 사람, 모든 활동, 그리고 모든 과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규범

모든 조직	모든 사람	모든 활동	모든 과정
단위대	청소년	대집회	준비단계
지구연합회	지도자	온라인 활동	진행단계
지방, 특수연맹	스카우트활동에 참여	야외 활동	사후단계
중앙본부	하는 일반인	국제 활동	
		교육 및 워크숍 등	



5. 한국스카우트연맹 행동강령

1.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어떠한 개인적·사회적 배경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2. 청소년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3.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사이버 폭력, 차별 및 배제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학대와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4. 사람마다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나의 언행이 타인에게 불편함이나 위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청소년과 1대1로 고립된 상황을 만들지 않으며, 모든 활동은 투명하게 진행한다.
6. 권력이나 지위를 남용하지 않으며, 평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5. 한국스카우트연맹 행동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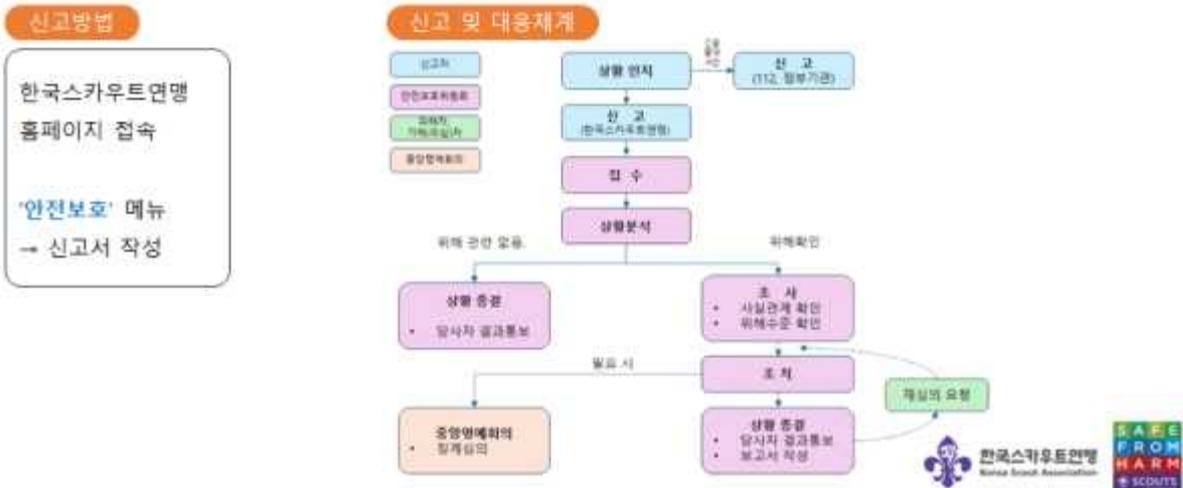
7. 청소년과 함께하는 활동 중에는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으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
8. 마약·불법 약물을 사용하거나 소지하지 않는다.
9.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책임 있고 모범적인 언행을 한다.
10. 의심되는 학대, 차별, 부적절한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보고한다.
11. 안전보호 관련 교육과 훈련에 성실히 참여한다.



6. 신고 및 대응 체계

'안전보호 관련 위반 사건'을 겪었거나 목격했을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

• 안전보호 관련 위반 사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사이버 폭력, 차별 및 배제 등



7. 아동·청소년 위해관련 법령

한국스카우트연맹은 국내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을 준수합니다.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세부 내용은 '안전보호정책' 문서 내 연계문서 3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Korea Scout Association



한국스카우트연맹 안전보호 정책

감사합니다.

안전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입니다.

안전보호를 약속하면 스카우트의 미래가 더 밝아집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Korea Scout Association



참고자료

위해 유형별 구체적 예시

아래에 제시하는 사례들은 스카우트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유형을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예시에 불과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상황에서는 이와 다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들은 예방과 인식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각 상황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세심한 주의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신체적 학대

- 교육 과정에서 체벌(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기)을 하는 경우
-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 오래 뛰기 등 과도한 체벌성 체육 활동을 강요
- 실수했을 때 머리카나 몸을 세게 잡아끌거나 흔드는 등의 행위

2. 정서적 학대

- 실수나 약점을 지속적으로 놀리거나 모욕하는 경우
-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큰소리를 치며 위축되게 만드는 경우
- “넌 쓸모없다”, “넌 리더가 될 수 없다” 등의 부정적 낙인 발언
-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깎는 경우
- 단체 활동에서 실수를 이유로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원치 않는 신체 접촉(어깨 쓰다듬기, 껴안기, 허리 감싸기)을 하는 경우
- 성적인 부분을 연상시키는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를 하여 아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
- ‘장난’이라며 신체 민감 부위를 만지는 경우

- 온라인으로 성적인 메시지, 사진, 영상을 보내는 경우
- 샤워실, 탈의실에서 지도자가 불필요하게 지켜보거나 사진을 찍는 경우
- 권위를 이용해 아동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4. 방임

- 아프다고 했는데도 치료나 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기후 변화(추위, 폭염)에 맞는 의복이나 안전 장비를 준비시키지 않는 경우
-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물을 제한하는 경우
- 안전 규칙(물놀이, 산행, 화기 사용)을 알려주지 않고 위험 상황에 방치
- 지도자가 장시간 자리를 비워 청소년들이 안전 관리 없이 방치되는 경우

5. 사이버 폭력

-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조롱하거나 괴롭힘
- 타인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사진)를 무단으로 공유
- 사진·영상이 동의 없이 SNS에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 발생
- 온라인 게임, SNS에서 스카우트 동료들끼리 욕설·비방을 주고받는 경우
- 성인 불법 사이트나 유해 콘텐츠 링크를 전송하는 경우

6. 차별 및 배제

- 특정인을 야영 활동에서 의도적으로 제외
- 특정인의 출신 지역, 피부색, 언어를 이유로 놀리거나 배제
- 특정 성별에게 기회나 활동 참여를 제한
- 특정 종교 의식을 강요하거나, 다른 종교 청소년을 배척하는 경우